고창군 농업용 저수지 현황조사 및 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ISO9001/ISO14001인증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2026년 고창군 농업용 저수지 현황조사 및 점검 용역(하반기)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따라 농업용 저수지의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3.1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내 농업용 저수지 100개소

3.2 과업세부내용

공종	사업량
1) 제체외관조사	100개소
2) RIMS(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입력 및 관리대장 작성	100개소

가. 제체외관조사

- 제　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 구조물 : 여·방수로, 감세공, 취수시설(취수탑, 사통, 복통)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나. 시설물 상태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 평가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출

3.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4. 과업변경 등

4.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 등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시

나.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다. 기타 용역관리자가 인정하는 사항

4.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용역관리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른 승인 사항

5. 현장조사책임자(현장대리인)

5.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책임기술자는 별표 5의 책임기술자의 자격 중 정기안전점검 토목분야의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2 사업책임기술자는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본 과업수행 중 장비 혹은 조사 직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등)
3) 예정공정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보안각서

6.2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용역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계획 대 실적 대비표 첨부)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나. 착수 후 용역관리자가 지정한 시기에 필요시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7. 성과품의 소유

7.1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설계도서, 저장장치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7.2. 본 사업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일체)은 본 건 사업이 만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가 되며 '을'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7.3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8.1 안전관리의 의무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조사장비 및 기기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8.2 현장종사자의 안전

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조사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처리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보호구 :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라.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른다.

8.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9.1 본 업무를 위한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을’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9.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10.1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관리자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10.3 참여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용역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4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0.5 현장조사는 시설물관리자와 지속적인 일정 협의로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0.6 기타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내용을 준용하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1. 과업 적용 기준

11.1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해설서(국토교통부)

라.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마.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바.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12. 현황조사

12.1 관련자료 수집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여야 한다.

1) 기존 농업기반시설물(저수지) 관리대장

2)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3) 과거 주요 재해현황, 즉 홍수피해 등에 대한 자료 등 검토
4) 시설물 점검기록, 안전도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합사항을 검토
5) 시설물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
6) 기타 필요한 자료 등

12.2 현장조사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매뉴얼 제3장 제3절 부재별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시설물의 전체 또는 주요 부재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12.3 여수로 (물넘이 및 방수로)

가. 여수로는 저수지의 중요한 부속 구조물로서 여수로의 손상은 제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열, 변형, 침하, 침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기능상 저해요소에 대하여도 조사한다.

나. 여수로의 균열은 대부분 콘크리트 균열로 콘크리트 타설 불량,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건조수축, 동결융해, 철근부식, 탄산화, 풍화작용, 박리 등에 기인되므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수로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여수로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 여수로와 제체와의 접촉면을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조사를 한다.

마.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바.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 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사.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아.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 상태를 조사한다.

자. 여수로는 접근수로, 물넘이,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를 조사한다.

12.4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실,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취수탑)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나. 취수용 제어기기인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은 부식, 도장, 변형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다. 복통은 관체 내부의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 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취수탑) 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조사한다.

13. 성과품 제출

13.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완료일 15일 전**에는 사전 검토용 보고서(안)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컬러로 인쇄하여 보고서 내용의 가독도(可読度)를 높여야 하며, 보고서 수록내용,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은 반드시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최종용역성과품은 CD·DVD-ROM, USB memory 등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다. 점검 결과 사진첩은 구조물별 주요부위 및 상태를 포함하는 사진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13.2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시설물 현황표

나. 시설물 관리대장(위치도 포함)

다. 저수지별 점검 결과

1)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표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현황

3)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13.3 제출 성과품

가. 종합보고서 2부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표(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서식 2-1)

다. 저장장치 2식(USB)

14.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정비 및 등록

가. 본 용역에서 조사된 자료는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시군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 입력한다. 단,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 자료 등록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른다.

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을 활용하기 위한 계정 및 시스템관련자료(매뉴얼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